

25년 봄무 정부수매 사전규격 공개

1. 구매사항

- 구매건명 : 국내산 봄무 정부수매
- 발주기관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급사업처
- 구매품목 : 노지 봄무
- 구매물량 : 7,500톤(375,000박스×20kg)
- 납품기간 : 2025년 6월 중
 - * 계약자별 납품기간은 비축기지 여건에 따라 별도 지정할 예정임
- 구매방법 : 공개경쟁입찰(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낙찰)
 - 입찰참가자격 : 무 재배포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생산자, 생산자단체, 산지유통인 등
 - 계약단가 : 박스 당 낙찰단가
 - 입찰물량 : 최저 500톤, 최대 1,000톤 내에서 100톤 단위 입찰
 - 입찰일자 : 2025. 5. 21(수) 오전(공고에 시간 지정)

2. 규격 공개사항

가. 품목 및 규격

구분	수매규격	물량		납품기간
		수량(박스)	중량(톤)	
봄무	박스당 20kg 내외 (9~10개, 개당 평균 2.0kg 내외)	375,000	7,500	25.6월 중

* 품위규격 · 포장재규격 · 표시방법은 각각 붙임 1·2·3 참조

나. 품위검사 및 안전성검사

- 품위검사
 - 공사 담당자(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)가 입고지에서 최종 품위 검사를 통해 인수여부 결정
- 안전성검사
 - 검사항목 : 잔류 농약 463종 및 중금속 2종(납, 카드뮴)
 - * 잔류허용기준은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품공전)」(식약처 고시)에 따름
 - 구매대상 포전에서 샘플 채취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

다. 구매가격조건

- 박스당(20kg 내외) 공급단가 적용
 - * 물품대, 수확작업비 및 상처비, 포장재비, 운송비 등 수확 포전에서 공사 지정지(공사비축기지, 민간 보관창고, 도매시장 등) 인도 시까지의 모든 제반 비용 포함

3. 기타사항

- 공사에 장기연체(1년 이상)가 있는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
- 본 사전규격 공개안 외의 내용은 본 입찰공고 참고 및 담당자 문의
 - 문의처 : 061-931-0921, 0924, 0926

- 붙임 : 1. 정부수매비축 무 품위규격 1부
2. 정부수매비축 무 포장재 규격 1부
3. 정부수매비축 무 표시방법 1부

붙임 1 정부수매비축 무 품위규격

※ 참고 : 농산물 표준규격 /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-16호(‘20.10.14시행) 준용

1. 품위규격

- 가. 날개고르기 : 9~10개/박스(20kg 내외)이며, 개당 평균 2.0kg 내외
- 나. 모양 : 껍질이 매끄러우며 잔뿌리가 적은 것
- 다. 신선도 : 뿌리가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
- 라. 잎 : 제거할 것
- 마. 중결점 : 없는 것
- 바. 경결점 : 없는 것

2. 기타조건

- 가. 동일품종으로서 품종 고유의 형상 및 색깔을 갖고 있는 것
- 나. 절단상태 및 뿌리상태가 양호하며 냉해, 추대, 바람들이 등의 병해충 피해가 없는 것

< 용어의 정의 >

-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
 - ㉠ 부패·변질 : 뿌리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
 - ㉡ 병해, 충해, 냉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
 - ㉢ 형상불량 : 부러진 것, 심하게 굵은 것, 윗뿌리가 2개 이상인 것, 찌개진것, 바람들이가 있는 것, 추대된 것
 - ㉣ 기타 : 기타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
-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
 - ㉠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
 - ㉡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
 - 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

붙임 2 정부수매비축 무 포장재 규격

※ 참고 : 농산물 표준규격 /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-16호(‘20.10.14시행) 준용

1.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.

2. 포장재 규격 : 도매시장 상장용 박스
 - 아래의 박스지종에 상당한 규격의 박스
 - * 박스지종 : KLB225.CK.K.CK.KLB225(BA), 이면(내부)코팅
 - * 지종은 KLB 상당의 규격으로 색은 무관

붙임 3 정부수매비축 무 표시방법

※ 참고 : 농산물 표준규격 /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-16호(‘20.10.14시행) 준용

1. 표시사항

(1) 의무표시 사항

(가) “표준규격품” 문구

(나) 품목

(다) 산지 : 산지는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 (원산지의 표시기준) 제1항의 국산농산물 표기에 따른다.

(라) 등급

(마) 무게 또는 개수

(바) 생산자(생산농가) 또는 생산자단체, 산지유통법인의 명칭 및 전화번호

2. 표시방법

(1) 포장외면에 일괄 표시하되 품목, 생산자(생산농가) 또는 생산자단체, 산지유통법인의 명칭 및 전화번호, 권장표시사항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.

(2) 의무 및 권장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.

(3) 표시양식(예시)

표 준 규 격 품					
품 목	신선무	등 급		생산자(생산자단체)	
품 종		무 게	kg	이름	
산 지	국내산	(개 수)	(개)	연락처	

※ 1. 글자크기 : 20포인트 이상(포장 면적이 3,000cm² 이상)

2. 포장재 중앙에 인쇄하여 부착

(4) 글자 및 양식의 크기, 임의 구성항목 상품특성,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aT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.